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240
----------	------

2022년 6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2. 5. 24.

2. 제안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회부일자 : 2022. 5. 27.

4. 상정일자 : 제30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22. 6. 17.)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승인

## Ⅱ. 제안설명의 요지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 1. 제안이유

-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보고서의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 서울시교육청 3개 기금의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961억 2천 4백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609억 3천 8백만원 대비 3,351억 8천 6백만원이 증가함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은
  - 수입은 총 768억 6백만원으로, 이자수입 8억 8천 1백만원, 예치금회수 599억 3천 7백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59억 8천 7백만원이고,
  - 지출은 총 750억 2천 9백만원으로, 신청사 건립 지열천공 및 지중열교환기 설치 공사 등 10억 2천 8백만원, 차년도 예치금으로 740억 1백만원이며,
  -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17억 7천 6백만원으로, 신청사 건립 사업 중 건설 사업관리 용역완료 기한 미도래, 1차 공사 등의 준공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하였고,
  -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757억 7천 7백만원으로, 향후 신청사 건립 사업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계획임

○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 수입은 총 20억 3백만원으로, 이자수입 3백만원, 예치금회수 10억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0억원이고,
- 지출은 총 19억 9천 1백만원으로,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에 6천8백만원, 예치금 19억 2천 3백만원이며,
- 당해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19억 3천5백만원임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 수입은 총 3,184억 1천 1백만원으로, 2021년도에 최초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적립하였으며,
-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184억 1천 1백만원으로, 향후 교육시설 환경개선 추진에 사용할 계획임

###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 1. 제안경위

-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022년 5월 24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2.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개요

- 관련 법령은 기금결산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금번 정례회 중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서에 따르면 '21회계연도에는 3개 기금이 실제 조성·운용된 바,
  - 서울시교육청이 운용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의 '21회계연도말 조성액은 757억 7,7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말 조성액(599억 3,700만원) 보다 26.4%, 158억 3,900만원 증가한 것이고,
  - 서울시교육청이 운용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21회계연도말 조성액은 19억 3,5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말 조성액(10억원) 보다 93.5%, 9억 3,500만원 증가한 것이며,
  - 서울시교육청이 운용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1년 1월 신설된 것으로 '21회계연도말 조성액은 3,184억 1,100만원인 것으로 제출됨

〈표 3-1〉 연도말 기금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A)	당해연도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E=A+B)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59,937	15,839	16,868	1,028	75,777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1,000	935	1,003	68	1,935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	318,411	318,411	0	318,411

### 3. 기금 결산 관련 검토

#### (1) 기금 조성 총괄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의 경우, '21회계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757억 7,700만원으로, '20회계연도말 기금 조성액(599억 3,700만원) 보다 26.4%, 158억 3,9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제출됨
-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경우, '21회계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19억 3,500만원으로, '20회계연도말 기금 조성액(10억원) 보다 93.5%, 9억 3,5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제출됨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경우, '21년 6월 서울시의회가 동 기금운용계획을 최초 의결한 바, 당초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시에 전액 예치금으로 계획하여 '21회계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3,184억 1,100만원 순증한 것으로 제출됨

## (2) 기금의 수입·지출 결산 검토

###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 가. 수입 결산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의 '21회계연도 당초 수입계획액은 976억 5,200만원이나 회계연도중 수입계획을 변경하여 수입계획현액을 당초보다 △188억 9,000만원 감액한 809억 2,500만원으로 조정하여, 768억 600만원이 된 것으로 제출됨
  
- 전입금은 당초 390억 200만원으로 수입계획하였으나 △188억 9,000만원이 감액된 201억 1,200만원으로 수정되어 수입계획을 변경하였으나, 변경된 수입계획현액보다 △41억 2,500만원이 감소된 159억 8,700만원이 실수납 된 바,
  - '21회계연도중 보통교부금 감액 및 토지 매각 등 협의 지연으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이 △188억 9,000만원 감액되어 당초 수입계획을 변경하였으나
  - 도곡동 산 60 소재 공유재산이 '22년 1월 매각계약이 이루어져 해당 매각대금(38억 7,700만원)이 '21회계연도가 아닌 '22회계연도 수입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관련 매각대금만큼 부족 수납 된 것으로 확인됨
  
- 예치금회수는 지난해회계연도말 예치금을 당해연도에 수납하는 과목으로 당초 581억 6,5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20회계연도 기금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599억 3,700만원으로 변경하여, 599억 3,700만원을 수납 처리한 것으로 확인됨
  
- 이자수입은 당초 4억 8,4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8억 7,500만원으로 변경하였으나, 수입계획현액보다 600만원 증가한 8억 8,100만원이 실수납된 것으로, 예치기간이 만료된 정기예금을 유지하여 이자 수입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됨

- 교육부의 관련 기준은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당해연도에 발생한 모든 수입과 지출을 계획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고, 은행예치금에 따른 이자수입 등 당초 예측치 못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기금운용부서가 이자수입이 증가한 만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초과수입 마냥 결산서상 실수납 처리한 것은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 결과로 판단됨

〈표 3-2〉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운 용 계 획			전년도 이월액 (D)	수입계획 현 액 (E=B+D)	수 납 액 (F)	증 감 액 (F-E)
	당 초 (A)	수 정 (B)	증감액 (C=B-A)				
계	97,652	80,925	△16,727	-	80,925	76,806	△4,119
전 입 금	39,002	20,112	△18,890	-	20,112	15,987	△4,125
예 치 금 회 수	58,165	59,937	1,772	-	59,937	59,937	-
이 자 수 입	484	875	391	-	875	881	6

## 나. 지출 결산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의 '21회계연도 당초 지출계획액은 976억 5,200만원이었으나, 809억 2,500만원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하여, 지출계획현액 보다 △58억 9,600만원이 감소된 750억 2,900만원을 지출하고, 17억 7,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으로 제출함
- **신청사 건립사업**은 당초 331억 6,500만원을 지출계획하였으나, 신청사 사업규모 조정계획에 따른 설계변경 및 공사 집행 계획 변경으로 △301억 1,800만원 감액한 30억 4,600만원으로 변경하였으나, 10억 2,8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됨

- **예치금**은 당초 644억 8,7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전입금** 중 교특회계 전입금 감액분과 **신청사 건립사업** 감액분을 반영하여 778억 7,800만원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한 바, 공유재산 매각대금 미수납으로 인해 △38억 7,700만원 감소된 740억 1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검토됨

〈표 3-3〉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B)	지출계획 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집행잔액 (F=C-D-E)
	당초	수정 (A)					
계	97,652	80,925	-	80,925	75,029	1,776	4,120
신청사 건립	33,165	3,046	-	3,046	1,028	1,776	242
설계비	12	234	-	234	217	-	17
시설비	31,312	1,368	-	1,368	718	500	150
감리비	1,638	1,350	-	1,350	74	1,276	-
시설부대비	200	92	-	92	17	-	75
예치금	64,487	77,878	-	77,878	74,001	-	3,877

## ②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 가. 수입 결산

-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2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중 당초 수입계획액은 20억원이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수입계획을 200만원 증액한 20억 200만원으로 변경하여, 20억 300만원이 실수납 된 것으로 제출됨
- **전입금**은 당초 수입계획액 10억원이 계획대로 실수납 되었고, **예치금회수**는 지난회계연도말 예치금을 당해연도에 수납하는 과목으로 수입운용 계획액 10억원 전액 수납된 것으로 제출함
- 다만, **이자수입**은 당초 42만원으로 계획한 이후 수입계획을 2,317,000원으로 수정한 것이나, 실제로는 수정된 수입계획현액보다 1,166,970원 증가한 3,483,970원이 수납된 것으로 확인됨

- 당초에는 보통예금 예치금액에 대해 6개월분 이자수입만 수입계획에 반영하였으나 실제 12개월분 보통예금이자 수납됨으로써 수입계획 대비 실수납액이 초과 발생된 것으로 검토되는 바,
- 현행 관련 법령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나, 동 초과수납의 경우에는 지출계획이 아닌 수입계획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
- 그러나 관련 법령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세입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정하고 있어 기금이 일부 예외적인 적용이 있으나 당해연도에 발생한 모든 수입과 지출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수입계획중 이자수입이 초과발생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①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거나 ②교육감 결재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③지방의회의 의결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도록 훈령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그 어떤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단순히 일반적인 세입예산을 초과수납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금의 수입결산중 초과수납으로만 처리한 것으로 교육부의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안으로 판단됨

〈표 3-4〉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운 용 계 획			전년도 이월액 (D)	수입계획 현 액 (E=B+D)	수 납 액 (F)	증 감 액 (F-E)
	당 초 (A)	수 정 (B)	증감액 (C=B-A)				
계	2,000	2,002	2	-	2,002	2,003	1
전 입 금	1,000	1,000	-	-	1,000	1,000	-
예 치 금 회 수	1,000	1,000	-	-	1,000	1,000	-
이 자 수 입	0.42	2	1	-	2	3	1

## 나. 지출 결산

-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21회계연도 당초 지출계획액은 20억원이었으나, 200만원 증가한 20억 200만원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하고, 지출계획현액 보다 △1,100만원 감소된 19억 9,1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제출함
- 결산결과를 검토하면, 수입 결산의 경우, 20억 300만원이 실수납된 것으로 제출되었으나, 지출 결산은 다음연도 이월액 없이 19억 9,1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제출되어 수입결산과 지출결산이 11,985,680원 불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표 3-5〉 2021회계연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수납액과 지출액 차이

(단위 : 백만원)

실 제 수 납 액 ( A )	지 출 액 ( B )	차 액 ( A - B )
2,003	1,991	11

- 동 기금의 수지(收支) 불균형은 고유목적사업인 남북교류협력기금사업의 집행잔액(11,985,680원)과 일치하는 것으로 교육부의 관련 기준에는 고유목적사업비의 집행잔액은 예치금으로 지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 남북교류협력기금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11,985,680원)을 예치금이나 그 어떠한 지출과목에도 계상하지 않고 누락시켜 수지(收支) 불균형이 발생한 채로 시의회에 결산 결과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것임
- 관련 법령은 자치단체로 하여금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고, 교육부의 관련 기준에도 고유목적사업비의 집행잔액 처리방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 기금운용부서인 ①민주시민생활교육과는 기금결산서 작성을 소홀히 하였고, 기금결산을 위한 ②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또한 수지 불균형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의결하였으며 기금결산서 작성에 있어 최종단계인 ③기금총괄관리 관도 수입·지출이 일치하지 않는 기금결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기금 결산에 대한 승인여부와는 별개로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남북교류협력기금사업**은 당초 지출계획액을 4억 5,0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남북관계 및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워 △3억 7,000만원 감액한 8,000만원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하여, 6,8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됨

- 동 기금이 최초 설치된 '20년도부터 코로나19와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여유 자금을 예치하는 것 이외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닐 것으로 사료됨에도 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6,8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동 지출사례가 지출계획현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에 해당되나, 사업예산은 지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종의 부가적 경비만 지출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예치금**은 당초 15억 5,0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남북교류협력기금사업중 운영비, 여비, 민간이전** 감액분과 연동하여, 3억 7,200만원을 증액하여 19억 2,200만원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하였음

- **이자수입**은 당초 계획 보다 1,166,970원 증가함에 따라 지출계획중 **예치금**도 1,166,970원이 초과 지출(적립) 된 바,
  - 당해 회계연도에 발생한 모든 수입과 지출은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치거나 교육감으로부터 결재를 얻어 기금에 대한 수입계획을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 회계연도중 국고보조금이나 전입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별도 조치없이 세입결산을 통해 단순 수납처리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한 것으로 사

료되나, 교육부의 관련 기준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세입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정하고 있어 ①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부터 수입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를 받거나 ②교육감 결재로 수입계획을 변경하여 수입계획액을 경정하는 절차가 필요하였으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판단됨

〈표 3-6〉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B)	지출계획 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집행잔액 (F=C-D-E)
	당초	수정 (A)					
계	2,000	2,002	-	2,002	1,991	-	11
남북교육 협력기금	450	80	-	80	68	-	12
운영비	198	78	-	78	67	-	11
업무추진비	2	2	-	2	0.12	-	1
여비	50	-	-	-	-	-	-
민간이전	200	-	-	-	-	-	-
예치금	1,550	1,922	-	1,922	1,923	-	△1

### ③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 가. 수입 결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당초 384억 5,900만원으로 수입계획하였으나, '21년 9월, 3,186억 3,700만원으로 수입계획을 변경하고, 3,184억 1,100만원을 실제 수납한 것으로 제출됨

○ 전입금은 당초 384억 1,100만원으로 수입계획 하였으나, 3,184억 1,100만원으로 수입계획을 변경하여 전액이 수납된 것으로 확인됨

- **이자수입**의 경우, 당초 4,800만원으로 수입계획하여 '21년 9월, 수입계획 중 이자수입을 2억 2,600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으나 수입결산 결과 전액 미수납된 것으로

〈표 3-7〉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운 용 계 획			전년도 이월액 (D)	수입계획 현 액 (E=B+D)	수 납 액 (F)	증 감 액 (F-E)
	당 초 (A)	수 정 (B)	증감액 (C=B-A)				
계	38,459	318,637	280,178	-	318,637	318,411	△226
전 입 금	38,411	318,411	280,000	-	318,411	318,411	-
이 자 수 입	48	226	178	-	226	-	△226

- 기금운용부서는 “기금의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21년도 정기예금에 가입하였으나 만기시기('22년도)가 도래하지 않아 예금이자수입이 미실현”된 것으로 회신한 바, '21회계연도에 당초 계획된 이자수입 2억 2,600만원 전액을 장부상 미수납 처리한 것임
- 동 기금의 예치금은 '21년 8월31일부터 '22년 8월31일까지 1년간 예치할 계획이었으나 예치금을 384억원으로 지출계획한 「기금운용계획안」이 '21년 7월 의결되고, 예치금을 3,184억원으로 지출계획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21년 9월, 순차적으로 의결되어 당초 계획한 예치 기간과 차이가 있으며
  - 당초 계획대로 전액을 일시에 예치한 경우라 하여도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정기예금은 예치기간을 통상적으로 1년으로 정하고 있어 예치기간 만기시 이자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당해 회계연도중 이자수입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당초 수입 계획된 이자수입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결산 시점에는 미수납액이 발생되고,

‘장부상 미수납액’이라 하여도 ‘장부상 수입결손’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어 동 기금의 이자수입에 대한 수입계획 변경이 필요하였던 사안으로 판단됨

- 기금운용부서로서는 관련 법령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어 이른바 ‘장부상 미수납액’은 2억 2,600만원에 불과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지출계획이 아닌 수입 계획이기에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변경없이 일반적인 세입예산을 미수납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미수납 처리한 것으로 사료되나
- ①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거나 ②교육감 결재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③지방의회의 의결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도록 훈령으로 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어떠한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당초 계획된 이자수입 2억 2,600만원 전액을 장부상 미수납 처리한 것은 장부상이나마 재정 결손을 가져온 방치행위로서 관련 법령에 근거한 시정 요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나. 지출 결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21회계연도 지출계획액은 당초 384억 5,900만원이었으나, 3,186억 3,700만원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하고, 3,184억 1,1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제출함
- 수입계획중 이자수입이 전액 미수납됨에 따라, 지출계획중 예치금도 지출계획 현액(3,186억 3,700만원) 보다 △2억 2,6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 관련 법령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은 불요하나, 기금운용계획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모든 수

입과 지출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수입계획중 미수납액이 발생되어 지출계획도 수정반영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나 단체장 결재 등 그 어떤 형태의 변경 근거가 없어 관련 법령과 기준에 대한 미숙함으로 장부상의 결손을 적법 절차에 따라 스스로 치유하지 못하고 결산 결과로만 처리한 것은 향후 유사사례 방지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표 3-8〉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B)	지출계획 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집행잔액 (F=C-D-E)
	당초수정	(A)					
계	38,459	318,637	-	318,637	318,411	-	226
예치금	38,459	318,637	-	318,637	318,411	-	226

### (3) 기금운용계획 변경 관련 검토

○ 관련 법령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 '21회계연도의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됨

〈표 3-9〉 기금 운용계획변경 현황(의회의결)

의 결 일	기 금 명	지 출 계 획 변 경 사 유	의 결 과
제 302 회 임 시 회 (’21. 9. 1.)	신청사 및 연수원 건 립 기 금	설계변경 및 공사 집행 계획 변경에 따른 ① 비용자성사업비 △301억 1,886만원 (기관운영관리 △90.8%) <sup>주1)</sup> 감액 ② 예치금 133억 9,147만원(재무활동 20.7%) 증액	원 안 가 결
	교 육 시 설 환 경 개 선 기 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증가에 따른 ① 예치금 2,801억 7,700만원(재무활동 728.5%) 증액	원 안 가 결
제 304 회 임 시 회 (’21.12.31.)	남 북 교 육 교 류 협 력 기 금	사업추진 상황 변경에 따른 ① 비용자성사업비 △3억 7,000만원 (교수-학습활동지원 △82.2%) 감액 ② 예치금 3억 7,231만원(재무활동 24.0%) 증액	원 안 가 결

※ 주1) 괄호( )의 비율은 해당 정책사업의 당초 지출계획액 대비 변경계획액의 비율임

○ 다만, 관련 법령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결이 필요한 바,

- 교육부가 정한 관련 기준에 따르면, 기금 결산서 작성시 의회의 사전의결(추경포함)을 받아 변경이 확정되는 기금운용계획은 제외하고는, 기금별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 설명서를 포함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 재무활동의 20%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단체장 결재로 변경할지 여부를 자율판단 할 수 있으나,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은 예금이자수입 과목의 수입계획보다 실제수납이 600만원 초과수납 되었고,
  -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수입계획중 예금이자수입 과목의 수입계획보다 실제수납이 1,166,970원 초과수납 되고, 지출계획중 예치금의 지출계획보다 1,166,970원 초과지출(적립)되었으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수입계획중 **예금이자수입**의 수입계획액 전액이 미수납되고, 지출계획도 수정하지 않았음
- 관련 기준에 따라 기금운용부서는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기금의 모든 수입을 총액 계상하고 지출에 반영하여 증감된 변동사항이 즉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나,
- 수입계획의 예금이자수입이나, 지출계획의 예치금 등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의 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증감액에 대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교육감의 결재 없이 단순히 결산상 초과수입·초과지출로 처리하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것은 기금운용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사료되어 기금운용부서와 기금총괄부서 모두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V. 토론 요지 : 「생략」

## VI. 부대 의결

-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은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의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을 요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우리 위원회는 사안의 발생원인을 고려한 결과 법이 정한 바와 같이 별도 의결하지는 않으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은 사안의 중요성을 심각히 인식하고, 우리 위원회가 별도 의결하여 시정요구하는 것에 준하여 '21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사안에 대해 사후 보완계획 및 결과, 향후 재발방지계획을 의결 후 30일내로 서면을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할 것을 요구함

## VI. 심사결과 : 승인(2022. 6. 17.)

#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의안 번호	3240
----------	------

제출연월일: 2022년 5월 24일  
제 출 자: 서울특별시교육감

## 1. 제안이유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보고서의 서울특별시의회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내용은 다음과 같음.

(단위: 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소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 (라)	
합 계	60,937,639,580	335,186,308,960	336,282,913,120	1,096,604,160	396,123,948,540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59,937,639,580	15,839,839,310	16,868,429,150	1,028,589,840	75,777,478,890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1,000,000,000	935,469,650	1,003,483,970	68,014,320	1,935,469,650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0	318,411,000,000	318,411,000,000	0	318,411,000,000

##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